

# 한국체육대학교 조교임용 규정

일부개정 2019. 5. 8. 규정 제784호

## 1. 개정이유

- 학과조교와 행정조교 중 업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재임용 근무기간을 연장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함
-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세부내용을 수정·보완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전문실기조교 추천 시 경기실적증명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, 실적 증명이 어려운 경우 그에 상응하는 추천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(안 제4조)
- 업무실적이 탁월한 학과조교와 행정조교의 경우 학과장 또는 부서장의 추천을 통해 재임용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재임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5조)
- 복무규정은 「국가공무원법」, 「교육공무원법」 등을 준용함(안 제10조)
- 띄어쓰기 및 자구수정(인→명, 의한다→따른다, 기타→그 밖에)  
(안 제6조, 제7조, 제8조, 제12조)
- 개인정보보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기입을 삭제하고 생년월일 기입으로 대체 (안 별지 제1호, 2호, 3호)

## 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(참고) : 「교육공무원 임용령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 없음
- 라. 붙 임 : 개정안 및 신·구조문 대비표

# 한국체육대학교 조교임용 규정 개정문

한국체육대학교 조교임용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전문실기조교 추천 시 경기실적증명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, 경기실적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그에 상응하는 자료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.

제5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단, 학과조교와 행정조교는 재임용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부서(학과)장의 추천으로 재임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6조제1항 중 “3인” 을 “3명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에” 로 한다.

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한 한다” 를 “제한한다” 로 한다.

제8조제2항제3호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에” 로 한다.

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조교의 복무는 「국가공무원법」, 「교육공무원법」 등을 준용한다.

제12조 중 “교육공무원임용령에 의한다” 를 “「교육공무원임용령」에 따른다” 로 한다.

부 칙(제784호, 2019. 5. 8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.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4조(임용추천)</b> ① 조교의 임용은 관련부서장의 추천(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)과 교학처장의 동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<b>제4조(임용추천)</b>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4. 전문실기조교 추천 시 경기실적증명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, 경기실적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그에 상응하는 자료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.</u></p>
<p><b>제5조(임용기간)</b> ① (생략)</p> <p>② 조교의 재임용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<b>제5조(임용기간)</b>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3. 단, 학과조교와 행정조교는 재임용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부서(학과)장의 추천으로 재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</u></p>
<p><b>제6조(조교재임용심사위원회)</b> ① 조교의 재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교재임용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며, 위원장은 교학처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처장, 훈련처장과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 <u>3인</u>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기타</u> 조교인사와 관련하여 총장이 심의를 요구한 경우</p> <p>③ (생략)</p>	<p><b>제6조(조교재임용심사위원회)</b>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3명</u> -----.</p> <p>②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7조(재임용의 제한)</b>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임용을 <u>제한한다</u>.</p> <p>1. ~ 3. (생략)</p>	<p><b>제7조(재임용의 제한)</b> ----- ----- <u>제한한다</u>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8조(조교의 배정)</b> ① (생략)</p> <p>② 전문실기조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배정한다.</p> <p>1. · 2. (생략)</p> <p>3. <u>기타</u> 종목의 특성상 조교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종목</p>	<p><b>제8조(조교의 배정)</b>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</p>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
제10조(복무관리) ① ~ ② (생 략) <u>&lt;신 설&gt;</u>	제10조(복무관리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조교의 복무는 「국가공무원법」, 「교육공 무원법」 등을 준용한다.																				
제12조(기타)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 항은 <u>교육공무원임용령에 의한다.</u>	제12조(기타) ----- <u>「교육공무원임용령」에 따른다.</u>																				
[별지 제1호서식]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r> <td rowspan="3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인적사항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성명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한자 : )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주민등록번호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주소</td> <td></td> </tr> </table>	인적사항	성명	(한자 : )	주민등록번호		주소		[별지 제1호서식]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r> <td rowspan="3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인적사항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성명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한자 : )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생년월일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주소</td> <td></td> </tr> </table>	인적사항	성명	(한자 : )	생년월일		주소							
인적사항		성명	(한자 : )																		
		주민등록번호																			
	주소																				
인적사항	성명	(한자 : )																			
	생년월일																				
	주소																				
[별지 제2호서식]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r> <td row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인적사항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성명 (한자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주민 등록 번호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본직 기관명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직위 (직급)</td> <td></td> </tr> </table>	인적사항	성명 (한자)	주민 등록 번호		본직 기관명	직위 (직급)		[별지 제2호서식]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r> <td row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인적사항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성명 (한자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생년 월일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소속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직위 (직급)</td> <td></td> </tr> </table>	인적사항	성명 (한자)	생년 월일		소속	직위 (직급)							
인적사항		성명 (한자)	주민 등록 번호																		
	본직 기관명	직위 (직급)																			
인적사항	성명 (한자)	생년 월일																			
	소속	직위 (직급)																			
[별지 제3호서식]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소속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직급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성명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생년월일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현보직일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able>	소속	직급	성명	생년월일	현보직일						[별지 제3호서식]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소속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직급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성명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생년월일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임용일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able>	소속	직급	성명	생년월일	임용일					
소속	직급	성명	생년월일	현보직일																	
소속	직급	성명	생년월일	임용일																	
	<b>부 칙(제784호, 2019. 5. 8.)</b>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																				